

싱가포르

구체적 약속 양허표

(개방 약속 제1차 패키지)

분야 또는 업종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p>I. 수평적 양허</p>			
<p>약속안함*은 기술적 실행가능성의 부족으로 약속안함을 의미함.</p>			
<p>본 양허표에 포함된 전 분야</p>	<p>4) 기업내 전근자(아래 참고)를 제외한 자연인의 주재는 약속 안함.</p> <p>4) 관리자, 임원, 및 전문가 직위에 있는 기업내 전근자의 일시적 이동을 제외한 숙련 인력의 일시적 이동은 약속 안함. 기업내 전근자란 아래에 정의된 대로 싱가포르 내에 설립된 자회사·지사 또는 제휴기업을 통하여 서비스를 공급하는 기업의 피고용인으로서 싱가포르 이외 지역에 위치한 동일 기업에서 싱가포르 입국 신청일 직전 1년 이상 고용된 자로서 다음의 하나인 자:</p> <p>(a) 관리자 - 조직 내에서 그 조직 또는 조직의 부서를 주로 지휘하고 다른 감독직·전문직·관리직 종사자의 업무를 감독 또는 통제하거나 직원에 대한 고용, 해고 추천 및 그 밖의 인사상의 조치(승진 및 휴가 승인)를 취할 권한을 가지며 일상 업무에 재량권을 행사하는 자로서 일상적 업무에 재량권을 발휘함. 전문직 종사자를 감독하는 일선 감독자를 제외한 일반 일선 감독자나 서비스 공급에 관련된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자는 제외됨.</p> <p>(b) 임원 - 조직 내에서 조직 관리를 주로 지휘하며, 의사 결정에 광범위한 권한을 행사하고, 그 기업의 상급 임원, 이사회, 주주로부터 일반적인 감독 또는 지시만을 받는 자. 임원은 그 조직의 서비스의 실질적인 공급과 관련된 업무는 직접 수행하지 아니함.</p>	<p>4) 약속 안함.</p>	

분야 또는 업종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p>(c) 전문가 - 조직 내에서 고도의 전문성이 있는 지식을 보유하고 당해 기업의 서비스, 연구 설비, 경영 등에 독점적인 지식을 가진 자. (전문가 범주에는 공인 자격증을 갖추어야 하는 직종이 포함되지만 이에 한정되지 않음.)</p> <p>기업내 전근자는 임국시 2년간 체류 가능하며 1회당 최대 3년간 추가로 체류기간을 갱신할 수 있으나 갱신기간을 포함한 총 체류기간이 8년을 초과할 수 없음.</p> <p>1), 2), 3), 4) 공급 형태나 분야 또는 업종을 막론하고 시장 접근란에 기재된 모든 구체적 약속은 금융서비스 분야에 기재된 제한사항 보다 우선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없음.</p>	<p>3) 법인의 설립권, 이동권 및 상업적 주재는 다음 조항을 준수해야 함.</p> <p>싱가포르 내에서 회사 등록을 원하는 외국인은 싱가포르 시민권자나 영주권자, 또는 취업 비자 소지자인 현지 관리자를 채용해야 한다. (단, 해당 외국인이 싱가포르 영주권자 또는 취업 비자 소지자인 경우에는 현지 관리자를 채용하지 않아도 회사 등록이 가능.)</p> <p>회사의 이사회 소속 이사 중 최소 한 명은 싱가포르에 거주하여야 함.</p> <p>싱가포르에 등록된 외국 기업의 전 지점에는 최소 2명의 싱가포르 거주자가 근무해야 함. (싱가포르 거주자는 싱가포르 시민권자나 영주권자, 혹은 싱가포르 취업 비자 소지자를 뜻함.)</p>	

분야 또는 업종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II. 개별 분야 양허			
1. 사업서비스			
A. 전문직 서비스			
b. 회계/감사 서비스 (CPC 8621)	1) 공인회계사들이 실제로 싱가포르에 거주하거나 회계법인의 파트너 또는 회계법인의 이사 중 최소 한 명이 싱가포르에 거주해야 한다는 것을 제외하고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1)과 동일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약속 안함.	
c. 세무 서비스 기타 세금관련 서비스를 제외한 세무 서비스 (CPC 863**))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약속 안함.	
d. 건축 설계 서비스 (CPC 8671)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u>유한 책임회사</u> - 등록된 건축 설계사 또는 관련 전문가(전문 엔지니어 또는 토지 측량사)만이 회사의 이사가 될 수 있음. - 기업의 이사, 관리자, 또는 직원으로 고용된 건축 설계사, 전문 엔지니어, 관련 전문가는 국가개발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기업의 주식 등급별로 통상 적어도 3분의 2이상 혹은 그보다 낮은 비율 이상의 주식을 소유할 수 있음.	1) 싱가포르에서 관련 당국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건축 설계 업무는 싱가포르 내에 실제로 체류하는 건축 설계사에 의해 수행되어야 한다는 것을 제외하고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분야 또는 업종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싱가포르 내의 전문 건축 설계 업무는 대개 싱가포르에 상시 거주하며 해당 기업의 주식을 최소 한 주 이상 소유하고 유효한 건축 설계사 자격증을 보유한 이사의 관리 및 통제 하에서 수행되어야 함. <p><u>무한 책임회사</u></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등록된 건축 설계사 또는 관련 전문가(전문 엔지니어 또는 토지 측량 전문가)만이 회사의 이사가 될 수 있음. - 건축 설계사, 관련 전문가나 이들에 의해 지명된 자, 해당 기업의 이사, 관리자, 또는 직원이 아닌 자는 회사의 일원으로 등록될 수 없다고 정관에 기재되어 있음. - 건축 설계 서비스와 관련된 업무는 다음의 요건을 갖춘 이사의 관리 및 통제 하에 수행되어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싱가포르에서 상시 거주 중인 건축 설계사 - 유효한 건축 설계사 자격증 보유 - 해당 기업의 일원이거나 해당 기업의 주식을 최소 한 주 이상 소유한 자 <p><u>합명회사</u></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합명회사는 유효한 건축 설계사 자격증을 소유한 건축 설계사 및 관련 전문가로만 구성됨. 그리고, - 싱가포르에서의 건축설계 서비스 제공은 싱가포르에 상시 거주하고 유효한 자격증을 소유한 건축 설계사 겸 파트너의 관리 및 통제 하에서 이루어져야 함. 	<p>4) 약속 안함.</p>	

분야 또는 업종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e. 엔지니어링 서비스 (CPC 8672**) <p>다음의 엔지니어링 서비스:</p> (a) 토목 공학 서비스 (b) 생산 공학 서비스 (c) 기계 공학 서비스 (d) 전기 공학 서비스 (e) 전자 공학 서비스 (f) 항공공학 서비스 (g) 해양공학 서비스 (h) 조선공학 서비스 (i) 산업공학 서비스 (j) 화학공학 서비스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유한 책임회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사 이사의 80% 이상이 등록된 전문 엔지니어 또는 관련 전문가(등록 건축 설계사 또는 토지 측량사)이어야 함. - 기업의 이사, 관리자, 또는 직원으로 고용된 건축설계사, 전문 엔지니어, 관련 전문가는 국가개발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기업의 주식 등급별로 통상 적어도 3분의 2이상 혹은 그보다 낮은 비율 이상의 주식을 소유할 수 있음. - 싱가포르 내의 전문 엔지니어링 업무는 싱가포르에 상시 거주하며 해당 기업의 주식을 최소 한 주 이상 소유하고 유효한 전문 엔지니어 자격증을 보유한 이사의 관리 및 통제 하에서 수행되어야 함. <p>무한책임 주식회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등록된 전문 엔지니어 또는 관련 전문가(전문 건축 설계사 또는 토지 측량사)만이 회사의 이사가 될 수 있음. - 등록된 전문 엔지니어, 관련 전문가나 이들에 의해 지명된 자, 해당 기업의 이사, 관리자, 또는 직원이 아닌 자는 회사의 일원으로 등록될 수 없다고 정관에 기재되어 있음. - 전문 엔지니어링 작업과 관련된 회사 업무는 다음의 요건을 갖춘 이사의 관리 및 통제 하에 수행되어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싱가포르에 상시 거주하며 싱가포르에 등록된 전문 엔지니어 · 유효한 전문 엔지니어 자격증 보유 · 해당 기업의 일원이거나 해당 기업의 주식을 최소 한 주 이상 소유한 자 	1) 엔지니어들이 실제로 싱가포르에 거주해야 한다는 것을 제외하고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분야 또는 업종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p><u>합명회사</u></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합명회사는 유효한 엔지니어 자격증을 소유한 전문 엔지니어 및 관련 전문가로만 구성됨. 그리고, - 싱가포르에서 모든 엔지니어링 분야의 서비스 제공은 싱가포르에 상시 거주하고 유효한 자격증을 소유한 건축 설계사 겸 파트너의 관리 및 통제 하에서 이루어져야 함. 	<p>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p> <p>4) 약속 안함.</p>	
<p>g. 조경 서비스 (CPC 86742**)</p>	<p>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p>	<p>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약속 안함.</p>	
<p>h. 일반의료 서비스 (CPC 93121) 및 진문의료 서비스 (CPC 93122)를 포함한 의료 서비스</p>	<p>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연간 신규 등록 외국인 의사가 의사 공급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것 외에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p>	<p>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약속 안함.</p>	
<p>치과서비스 (CPC 93123)</p>	<p>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p>	<p>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약속 안함.</p>	

공급형태 : 1) 국경간 공급, 2) 해외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또는 업종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i. 수의료서비스 (CPC 932)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약속 안함.	
B. 컴퓨터 및 관련 서비스			
a. 컴퓨터 하드웨어 설치 관련 자문 서비스 (CPC 84100)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b. 소프트웨어 실행 서비스 (CPC 842)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c. 데이터 프로세싱 서비스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d. 데이터베이스 서비스 (CPC 84400)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분야 또는 업종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C. 연구개발 서비스 a. 생명공학 서비스 및 산업연구 등 자연과학 연구개발 서비스 b. 경제연구 및 행동연구 등 사회과학 및 인문학 연구개발 서비스 (CPC 852**)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약속 안함.	
D. 부동산 서비스 a. 수수료 및 계약에 근거한 주거 및 비주거 자산관리 서비스 (CPC 82201, 82202)	1) 센토사 개발공사가 휴양지 센토사섬의 수로 및 싱가포르 남섬 지역을 개발할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이라는 것을 제외하고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센토사 개발공사가 휴양지 센토사섬과 센토사섬의 수로 및 싱가포르 남섬 지역을 개발할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이라는 것을 제외하고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센토사 개발공사가 휴양지 센토사섬과 센토사섬의 수로 및 싱가포르 남섬 지역을 개발할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이라는 것을 제외하고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센토사 개발공사가 휴양지 센토사섬과 센토사섬의 수로 및 싱가포르 남섬 지역을 개발할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이라는 것을 제외하고 제한 없음. 4) 약속 안함	

공급형태 : 1) 국경간 공급, 2) 해외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또는 업종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E. 운전인력을 동반하지 않은 임대서비스			
a. 선박 관련 (CPC 83103)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약속 안함.	
b. 항공기 관련 (CPC 83104)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약속 안함.	
c. 자동차 관련 (CPC 831**)	1) 싱가포르 거주자의 싱가포르 내 이용을 목적으로 하는 자동차 임대자가 금지된다는 것을 제외하고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싱가포르 거주자의 싱가포르 내 이용을 목적으로 하는 자동차 임대가 금지된다는 것을 제외하고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약속 안함.	
F. 기타 사업 서비스			
a. 광고 서비스 (CPC 8711, 8712, 8719)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약속 안함.	
b.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 서비스			
상업용 시장 조사 (CPC 86401)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약속 안함.	

공급형태 : 1) 국경간 공급, 2) 해외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또는 업종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c. 경영컨설팅 서비스 (CPC 865)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약속 안함.	
d. 경영컨설팅 관련 서비스 (CPC 866)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약속 안함.	
e. 기술 검사 및 분석 서비스			
자동차 기술 검사 및 분석 서비스 (CPC 8676**)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약속 안함.	
자동차 및 선금협회 기술 검사 및 분석 서비스를 제외한 기술 검사 및 분석 서비스 (CPC 8676**)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약속 안함.	
f. 유진 서비스를 포함, 농업, 수렵, 임업 및 광산업 관련 자문 및 상담 서비스 (CPC 881**, 882**, 883**, 5115**)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약속 안함.	

분야 또는 업종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k. 인력알선 서비스 (CPC 872)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약속 안함.	
I. 조사 및 보안 보안 자문 서비스 (CPC 87302)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약속 안함.	
보안경보 모니터링 서비스 (CPC 87303)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약속 안함.	
비무장 경호 서비스 (87305**)	<p>시장 접근 및 내국민 대우에 대한 수평적 제한</p> <p>이 분야의 모든 약속은 개인 수사 및 보안 회사법(cap. 249)을 준수함. 이 법률의 내용은 다음과 같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인은 전문 비무장 경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를 설립할 수 있으나 현지인이 참여하는 조건으로 회사를 등록할 수 있음. 이사 중 한 명 이상이 싱가포르 시민권자 또는 싱가포르 영주권자여야 함. - 외국인 이사는 본국으로부터 형사상 유죄 판결을 받지 않았다는 증명서를 제출하거나 선서 관리관 앞에서 법정 신서를 하여야 함. - 외국인은 경호인으로 일할 수 없으나 회사 관리 업무에는 관여할 수 있음. <p>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p>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약속 안함.	

분야 또는 업종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n. 장비 관리 및 수리 (해상 선박, 항공기 또는 기타 운송 장비 제외) (CPC 633, CPC 8861-8866**)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약속 안함.	
o. 빌딩 청소 서비스 (CPC 874)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약속 안함.	
p. 사진 서비스 (CPC 875)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약속 안함.	
q. 포장 서비스 (CPC 876)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약속 안함.	
s. 국제회의 용역서비스 (CPC 87909**)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약속 안함.	
t. 기타			
통번역 서비스 (CPC 87905)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약속 안함.	

공급형태 : 1) 국경간 공급, 2) 해외소비, 3) 상업적 주제, 4) 자연인의 주제

분야 또는 업종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건축 설계를 제외한 실내디자인 서비스 (CPC 87907**)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약속 안함.	
2.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B. 쿠리어 서비스			
편지 및 엽서를 제외한 문서 및 소포 등의 쿠리어 서비스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약속 안함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약속 안함.	
D. 통신 서비스			
<u>일반적 조건</u>			
이 양허표에 기재된 약속은 다음 조건을 준수함. 1. 허가 수는 선로설치권과 주파수 가용성 등 자원의 희소성을 이유로 제한될 수 있음. 2. 방송법에 따라 규제되는 서비스는 제외됨.			
1. 기본 통신서비스 (실비 기반): (a) 공중 교환 서비스 ¹⁾ (국내 및 국제) (b) 전용회선 서비스 (국내 및 국제)	1) 허가받은 사업자와의 상업적 약정에 따름. 2) 제한 없음. 3) 총 외국인 지분 참여는 73.99%(직접 투자 49%, 간접 투자 24.99%)로 제한됨.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첨부 문서 참조

1) 음성, 데이터 및 팩시밀리 서비스를 포함함.

공급형태 : 1) 국경간 공급, 2) 해외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또는 업종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2. 이동통신 서비스 ²⁾ : (a) 공중 이동 데이터서비스 (PMDS) (b) 공중 주파수 공용 서비스(PTRS) (c) 공중 무선 호출 서비스(PRPS) (d) 공중 셀룰러 이동전화 서비스 (PCMTS)	1) 허가받은 사업자와의 상업적 약정에 따름. 2) 제한 없음. 3) 총 외국인 지분 참여는 73.99%(직접 투자 49%, 간접 투자 24.99%)로 제한됨.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첨부 문서 참조
3. 재판매 기관: (a) 공중 교환 서비스 (국내 및 국제) (공중 교환망에 연결된 전용 회선의 사용은 제외) (b) 전용 회선 서비스 (국내 및 국제) (공중 교환망과 연결안됨) (c) 공중 셀룰러 이동전화 서비스 (d) 공중 무선 호출 서비스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첨부 문서 참조

2) 이동통신 서비스는 공중 이동 브로드밴드 멀티미디어 서비스 및 고정 무선 브로드밴드 멀티미디어 서비스를 포함하지 않음.

공급형태 : 1) 국경간 공급, 2) 해외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또는 업종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4. 부가가치 통신망 (VAN) 서비스: 해당 서비스: - 전자 메일 - 음성 메일 - 온라인 정보 및 데이터베이스 검색 - 전자 데이터 교환 - 온라인 정보 및/또는 데이터 프로세싱 - 저장 및 전송(S&F) - 저장 및 검색(S&R)	1) 부가가치 통신망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싱가포르 정보통신 개발국(IDA) 허가가 요구됨. 2) 제한 없음. 3) 1)과 동일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약속 안함.	첨부 문서 참조
D. 시청각 서비스 (i) 다음 시청각물의 제작, 배급 및 상영 서비스 - 영화 - 비디오 레코딩 - (ii)에서 배제된 항목을 제외한 사운드 레코딩 (CPC 9611, CPC 9612)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약속 안함.	

분야 또는 업종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ii) 모든 방송 및 시청각 서비스, 방송 관련 서비스는 제외되며 그 예는 다음과 같음. - 무료 송출 방송 - 케이블 및 유료 방송 - 위성을 통한 직접 방송 - 텔레텍스트 방송			
3. 건설 및 관련 엔지니어링 서비스 아래 서비스를 포함하는 건설서비스: - 빌딩관련 일반 건설 (CPC 512) - 토목관련 일반 건설 (CPC 513) - 설치 및 조립 (CPC 514+516) - 빌딩 완성 및 마무리 작업 (CPC 517) - 기타 (CPC 511+515+518)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약속 안함.	
4. 유통 서비스	시장 접근 및 내국민 대우에 대한 수평적 제한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한, 수입 금지 또는 비자동적 수입 허가에 해당되는 모든 상품의 유통서비스는 이 약속의 범위에서 제외됨. 싱가포르의 수입 금지 또는 비자동 수입 허가체계에 관한 모든 법률, 규정 및 기타 조치에 명시된 상품목록을 수정 및/또는 확대할 수 있는 권리나 재량권은 싱가포르에 귀속됨.		

공급형태 : 1) 국경간 공급, 2) 해외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또는 업종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A. 위탁 증개입 서비스 의약품, 화장품 등 제외한 위탁증개 서비스 (CPC 621, 단 CPC 62117 제외)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약속 안함.	
B. 도매서비스 약품, 의료용 및 수술용, 정형용 의료기기를 제외한 도매 서비스 (CPC 622**)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약속 안함.	
D. 프랜차이즈 프랜차이즈 서비스 (CPC 8929**)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약속 안함.	
5. 교육 서비스	공급 형태를 막론하고 모든 시장접근 및 내국민 대우에 관한 구체적인 약속은 싱가포르에서 전문직 개업에 필요한 입학, 등록 및 자격취득을 목적으로 한 대학 학위인정에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음.		
D. 성인 교육 서비스 (CPC 924 n.e.c)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약속 안함.	
6. 환경 서비스			
C. 위생 및 유사 서비스 (CPC 9403)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약속 안함.	

공급형태 : 1) 국경간 공급, 2) 해외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또는 업종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D. 배기가스 정화 서비스 (CPC 9404)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약속 안함.	
E. 소음저감 서비스 (CPC 9405)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약속 안함.	
7. 금융 서비스			
A. 보험 및 보험관련 서비스 본 양허표의 모든 약속은 싱가포르 통화 감독청(MAS) 또는 여타의 관련 당국이나 기관의 입국 요건, 국내 법률, 지침, 규칙 및 규정, 조건(GATS 6조와 GATS 금융 서비스 부속서 2조)에도 합치되어야 함.			
(a) 연금, 소득보상보험, 상해보험, 건강보험 등 생명보험 서비스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이 조치는 내국민 대우에 대한 제한 조치가 되기도 함. 외국인 당사자의 싱가포르인 소유 기업의 주식 지분 참여 제한은 49%이며 주식 취득으로 인해 외국인 당사자가 해당기업의 최대 주주가 되지 아니해야 함. 보험회사 신규 허가, 대표 사무소 신규 설립 및 모든 사회보장연금, 공무원 연금, 또는 법정 저축 기금의 자금 사용(투자를 통한 사용 포함)과 관련된 활동은 약속 안함.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공급형태 : 1) 국경간 공급, 2) 해외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또는 업종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b) 상해보험, 건강보험, 신원보증보험, 계약 이행보증보험 또는 이와 유사한 기타 보증보험을 포함한 비생명보험 서비스	1) 약속 안함. 2) 자동차 제3자 책임보험과 근로자 상해보험 등 강제보험은 싱가포르의 허가받은 보험회사에서만 가입할 수 있음. 3) 외국인 당사자의 싱가포르인 소유 기업의 주식 지분 참여 제한은 49%이며 주식 취득으로 인해 외국인 당사자가 해당기업의 최대 주주가 되지 아니해야 함. 보험회사 신규 허가는 및 대표 사무소 신규 설립은 약속 안함.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c) 재보험 및 재해보험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재보험 회사는 지점이나 자회사로만 설립해야 한다는 것을 제외하고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d) 보험 중개서비스 구성 보험 중개	1) 제한 없음. 2) 이 조치는 내국민 대우에 대한 제한 조치가 되기도 함. 미등록 보험회사의 대리 역할을 할 수 없음. 신주책임 상호보험에 의해 보장되는 선주 해상책임 관련 보험 및 재보험을 제외하고, 보험 중개회사가 싱가포르 내에서 발생하는 위험을 보장해 주는 보험을 싱가포르 이외 지역에 있는 보험 회사에 가입 중개시 싱가포르 통화감독청의 승인이 요구됨. 3) 이러한 조치는 내국민 대우에 대한 제한이기도 함. 직접보험 ³⁾ 및 재보험 중개회사를 싱가포르에서 설립된 회사로 인정한다는 것을 제외하고 약속 안함.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약속 안함.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3) 직접 보험 중개회사란 보험법 하에서 재보험 중개회사가 아니라 일반 보험 및 장기 상해 및 건강 보험 중개회사를 의미함.

분야 또는 업종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e) 보험 계리, 손해 사정, 공동해손 사정 보조 서비스 및 자문 서비스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B. 은행 및 기타 금융 서비스 본 양해표의 모든 약속은 싱가포르 통화 감독청(MAS) 또는 여타의 관련 당국이나 기관의 입국 요건, 국내 법률, 지침, 규칙 및 규정, 조건(GATS 6조와 GATS 금융 서비스 부속서 2조)에도 합치되어야 함.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이 조치는 내국민 대우에 대한 제한 조치가 되기도 함. 은행, 증권사 및 금융회사로 승인된 기관에 한해 예치금을 수취할 수 있음. 외국 금융 기관은 파산절차, 또는 법정관리가 진행될 때 외국 지점의 수탁자보다 자국의 수탁자에게 우선권을 주도록 요구하는 자국법 규정을 준수할 경우 싱가포르 통화 감독청은 싱가포르 내 외국 금융기관에 대해 차별적 조치를 취함으로써 싱가포르 내 싱가포르 통화 감독기관의 예금자를 보호할 수 있음. 싱가포르 통화 감독청은 외국 은행에게 싱가포르에서 법인을 설립하도록 요구할 수 있음.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u>상업 은행</u> 외국 은행은 한 개 사무소로만 운영할 수 있음(후방 지원조직 제외). 외국 은행은 점포 외부에 현금 출납기(ATM) 및 ATM 네트워크를 설치하거나 신규 분점을 설립할 수 없음. 모든 전자뱅킹 서비스 제공은 약속 안함. 은행 사무소 및 점포의 신규 설립 및 이전시 싱가포르 통화 감독청의 사전 승인이 요구됨. 도매 은행은 거주자 및 비거주자로부터 외화 정기예금만을 수취할 수 있으며 당좌예금을 운용할 수 있음. 싱가포르 달러 예치금의 경우에는 1회 예치금이 25만 달러를 초과하는 금액만을 수취할 수 있음. 여외 은행은 거주자 및 비거주자로부터 외환 정기예금을 수취할 수 있음. 싱가포르 달러 예치금의 경우에는, 비거주자에 한하여 1회 예치금이 25만 달러를 초과하는 금액만을 수취할 수 있음.	
(a) 공공으로부터의 예금 및 기타 상환가능한 자금 수취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이 조치는 내국민 대우에 대한 제한 조치가 되기도 함. 은행, 증권사 및 금융회사로 승인된 기관에 한해 예치금을 수취할 수 있음. 외국 금융 기관은 파산절차, 또는 법정관리가 진행될 때 외국 지점의 수탁자보다 자국의 수탁자에게 우선권을 주도록 요구하는 자국법 규정을 준수할 경우 싱가포르 통화 감독청은 싱가포르 내 외국 금융기관에 대해 차별적 조치를 취함으로써 싱가포르 내 싱가포르 통화 감독기관의 예금자를 보호할 수 있음. 싱가포르 통화 감독청은 외국 은행에게 싱가포르에서 법인을 설립하도록 요구할 수 있음.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u>상업 은행</u> 외국 은행은 한 개 사무소로만 운영할 수 있음(후방 지원조직 제외). 외국 은행은 점포 외부에 현금 출납기(ATM) 및 ATM 네트워크를 설치하거나 신규 분점을 설립할 수 없음. 모든 전자뱅킹 서비스 제공은 약속 안함. 은행 사무소 및 점포의 신규 설립 및 이전시 싱가포르 통화 감독청의 사전 승인이 요구됨. 도매 은행은 거주자 및 비거주자로부터 외화 정기예금만을 수취할 수 있으며 당좌예금을 운용할 수 있음. 싱가포르 달러 예치금의 경우에는 1회 예치금이 25만 달러를 초과하는 금액만을 수취할 수 있음. 여외 은행은 거주자 및 비거주자로부터 외환 정기예금을 수취할 수 있음. 싱가포르 달러 예치금의 경우에는, 비거주자에 한하여 1회 예치금이 25만 달러를 초과하는 금액만을 수취할 수 있음.	

분야 또는 업종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p><u>상업 은행</u> 종합 은행 및 도매 은행 신규 설립 불가. 신규 외국은행은 해외 지사 또는 대표사무소로만 설립 가능. 대표 사무소는 은행 업무를 수행하거나 이 조치는 내국민 대우에 대한 제한 조치가 되기도 함. 대리점 역할을 할 수 없음. 외국 은행은 싱가포르 통화 감독청의 승인을 얻어 싱가포르 비거주자만을 대상으로 외환 저축 계좌를 운영할 수 있음. 모든 단일투자자 또는 공동투자그룹의 싱가포르 은행 지분 보유 한도는 5%로 제한됨.</p> <p><u>종금사</u> 외국 은행 및 종금사는 종금사의 자회사 또는 지사를 설립할 수 있음.</p> <p><u>단자회사</u> 신규 단자회사 설립 불가. 외국인의 단자회사 지분 취득 및 기존 단자회사의 외국인 보유 지분을 타 외국인 당사자에게 양도하는 것은 약속 안함. 싱가포르인 또는 외국인 소유의 모든 단자회사는 싱가포르 달러 업무만을 취급할 수 있음. 적절한 자격을 갖춘 단자회사는 싱가포르 통화 감독청의 사전 승인을 얻어 외환, 금, 또는 기타 귀금속을 취급하고 외화표시 증권, 주식, 또는 채권, 전환증권을 취득할 수 있음.</p>	<p>싱가포르 내에 설립된 은행 이사의 대다수는 싱가포르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여야 함⁴⁾.</p> <p><u>종금사</u> 종금사는 한 개 사무소로만 운영할 수 있음 (후방 지원조직 제외). 종금사 사무소의 신규 설립 및 이전시 싱가포르 통화 감독청의 사전 승인이 요구됨. 종금사는 싱가포르 통화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 싱가포르 거주자 및 비거주자로부터 외화자금을 모집하고 비거주자를 대상으로 외환 저축 계좌를 운영할 수 있으며, 해당 종금사 관련 주주, 은행, 타 종금사 및 금융회사의 통제 하에 있는 주주 및 기업으로부터 싱가포르 달러 자금을 모집할 수 있음.</p> <p><u>단자회사</u> 단자회사 신규 설립과 분점 이전시 싱가포르 통화 감독청의 사전 승인이 요구됨. 외국인 소유 단자회사는 점포 외부에 현금 출납기(ATM) 및 ATM 네트워크를 설치하거나 신규 분점을 설립할 수 없음.</p>	

4) 싱가포르 통화 감독청은 싱가포르 외부에서 설립된 타 당사국 은행이 소유한 자회사로 이사의 과반수 이상이 싱가포르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가 아닌 은행의 경우에도 싱가포르 내 설립을 허용할 수 있음.

분야 또는 업종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b) 소비자 금융, 주택담보 대출, 상거래 자금조달 및 팩토링 금융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대출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약속 안함. 이 조치는 내국민 대우에 대한 제한 조치라 되지 않음. 2) 제한 없음. 3) 이 조치는 내국민 대우에 대한 제한 조치가 되기도 함. (i) 인하우스 신용카드(특정 기업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신용카드)를 제외한 일반 신용카드는 싱가포르 통화 감독청이 관련 지침에 의거해 승인된 신용카드 회사에 의해 발급 가능. (ii) 비거주 금융 기관에게 5백만 싱가포르 달러를 초과하는 신용 편의를 제공하거나 싱가포르 달러로 주식 및 채권 발행을 준비해 준 금융 기관은 그 결과 싱가포르 달러 수익금이 발생할 경우, 자금인출 즉시 또는 해외송금 이전에 외환 스왑 또는 환전하도록 해야 함. 싱가포르 달러 수익금이 싱가포르 달러 통화 투기에 사용될 것이라고 판단할 이유가 있는 경우, 금융기관은 비거주 금융기관에게 싱가포르 달러 신용 편의를 제공해서는 안됨. (iii) 싱가포르 통화 감독청의 승인을 요하는 활동을 하지 아니하는 금융회사는 설립 허용됨.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각 역의 은행의 싱가포르 거주자에 대한 싱가포르 달러 대출은 총 2억 달러를 초과할 수 없음. 역의 은행은 2억 달러 대출한도 제한을 피하기 위해 관련 증금을 활용해서는 아니됨. 신용카드 회사를 위한 점포 외 지역 현금 출금이 설치되는 약속 안함.	
(c) 금융 리스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위 B(h)에 기재된 활동을 제외하고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위 B(h)에 기재된 사항을 제외하고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분야 또는 업종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d) 신용 카드 및 직불 카드, 여행자 수표, 은행발행 어음을 포함한 모든 지불 및 송금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이 조치는 내국민 대우에 대한 제한 조치가 되기도 함. 은행 및 송금사에 의해 송금 업무가 수행되는 송금소를 제외한 모든 송금소는 싱가포르 시민이 파반수 지분을 소유하여야 함. 은행발행 어음은 은행에 한해 발행할 수 있음. 싱가포르 통화 감독청의 허가를 받은 싱가포르 은행에 한하여 다목적 선불 카드를 발행할 수 있음. 위 B(b)3)에 기재된 제한 요건은 B(d)의 활동에도 동일하게 적용됨.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e) 보증 및 약정	1) 신용보증보험, 계약이행보험, 또는 이와 유사한 기타 보증보험을 제공하는 보험회사의 활동이 기재된 A(b)에 명시된 제한 요건을 제외하고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신용보증보험, 계약이행보험, 또는 이와 유사한 기타 보증보험을 제공하는 보험회사의 활동이 기재된 A(b), 그리고 B(b)3)(ii)에 명시된 제한 요건을 제외하고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분야 또는 업종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p>(f) 다음과 같은 외환시장, 장외시장이나 다른 시장에서의 금융상품의 자기·고객위탁 매매서비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기금융상품(수표, 어음, CD 포함) - 외환 - 금융파생상품 (선물·옵션 포함) - 외환·금리상품(스왑, 선도 금리 약정 포함) - 양도성 증권 - 기타 양도 가능한 상품 및 금융자산 (금괴 포함) 	<p>1) B(f)에 기재된 자기매매상품을 제외하고 제한 없음. 환율·금리 상품을 비롯하여 단기금융상품 및 외환상품 거래는 금융기관을 통해서만 수행 가능함. 이 조치는 내국민 대우에 대한 제한 조치가 되기도 함.</p> <p>2) 제한 없음.</p> <p>3) 이 조치는 내국민 대우에 대한 제한 조치가 되기도 함. 은행 및 증권사는 고객을 위해 금융선물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자회사 설립이 요구됨. 싱가포르인 및 외국인이 소유한 금융기관에 의한 파생상품 제공은 다음의 경우 허용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 상품이 국제적으로 저명한 타 금융센터에 의해 제공되고 해당 금융센터의 감독당국이 해당 시장에서 그러한 상품을 제공하는 것에 동의했을 경우, - 해당 금융기관의 모 감독자(parent supervisor) 및 본점이 싱가포르 지사/자회사의 그러한 상품 제공 사실을 인지하고 반대하지 않을 경우, 그리고, - 해당 금융기관에 재무건전성 및 그러한 상품거래에 적합한 내부 통제장치 및 위험관리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고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라고 싱가포르 통화 감독청이 판단하는 경우. <p>싱가포르 달러와 관련된 파생상품 제공은 B(b)(3)(ii)에 기재된 요건에 따름.</p> <p>환전 업무가 은행 및 증권사에 의해 수행되는 환전소를 제외한 모든 환전소는 싱가포르 시민이 파반수 지분을 소유하여야 함.</p> <p>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p>	<p>1) 제한 없음.</p> <p>2) 제한 없음.</p> <p>3) B(b)에 기재된 활동 외에는 제한 없음.</p> <p>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p>	

분야 또는 업종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g) 증권인수 및 증권배분에 대리인으로 참여하는 것을 포함하여 모든 종류의 증권 발행에 참여하고 그러한 증권발행 관련 서비스 제공	1) 싱가포르에 있는 증권회사, 은행 또는 증권사를 통한 자기계좌 증권발행 참여 및 증권인수·증권배분 외에는 약속 안함. 이 조치는 내국민 대우에 대한 제한 조치가 되기도 함. 2) 제한 없음. 3) 이 조치는 내국민 대우에 대한 제한 조치가 되기도 함. 싱가포르 증권거래소(SGX-ST)는 신규 거래회원을 수락할 것임. 신규 회원은 싱가포르에서 설립되고 싱가포르 거주 투자자로 구성된 기업의 싱가포르 달러 표시 증권(최소 20만 싱가포르 달러 이상 기준)을 직접 거래할 수 있음. 대표 사무소는 업무를 수행하거나 대리인 역할을 할 수 없음. 외국인에 의한 싱가포르 증권거래소 회원기업의 신규 및 기존 지분 취득은 약속 안함. 은행 및 증권사의 싱가포르 증권 거래소 및 싱가포르 선물 거래소(SGX-DT) 회원자격은 자회사를 통해 유지되어야 함. 싱가포르 정부 국제 전문 신규 딜러는 약속 안함.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B(b)에 기재된 활동 외에는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h) 통화중개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신규 통화 중개사는 약속 안함. 이 조치는 내국민 대우에 대한 제한 조치가 되기도 함.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분야 또는 업종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i) 현금 또는 포트폴리오 관리, 모든 형태의 간접 투자관리, 연기금 관리, 보관, 공탁 및 신탁 서비스 등의 자산 관리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이 조치는 내국민 대우에 대한 제한 조치가 되기도 함. 자산관리 회사, 공탁 및 신탁 서비스 회사는 지사 또는 자회사로 설립 가능. CDP(Central Depository Pte Ltd)는 전자 거래 시스템 하에서 유일하게 증권 보관 공탁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조직임. 사회보장연금, 공무원 연금 또는 법정 저축 기금의 자금 사용(투자를 통한 사용 포함)과 관련된 활동은 약속 안함.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j) 증권 상품, 파생 상품 및 기타 양도 가능한 상품을 포함한 금융 자산의 결제 및 청산 서비스	1) 해외 거래소에만 등록된 금융 자산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결제 및 청산 서비스 외에는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이 조치는 내국민 대우에 대한 제한 조치가 되기도 함. 거래소 거래 증권 및 금융 선물물의 결제 및 청산 서비스는 각각 CDP 및 싱가포르 선물 거래소에 의해 제공 가능. 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단일 청산소에 한하여 싱가포르 달러 수표 및 은행간 자금이체 관련 청산 서비스 제공 가능.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약속 안함.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k) 신용조회 및 분석, 투자 및 포트폴리오 연구 및 상담, 취득 및 기업 구조조정, 전략에 대한 상담 등 상담 및 기타 금융 보조 서비스	1) 투자 및 포트폴리오 연구 서비스 제공과 공중에 대한 상담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상업적 주제가 요구됨. 2) 제한 없음. 3) 금융 상담회사는 해외 지사 또는 대표 사무소만 설립 가능. 대표 사무소는 은행 업무를 수행하거나 이 조치는 내국민 대우에 대한 제한 조치가 되기도 함. 대표 사무소는 업무를 수행하거나 대리점 역할을 할 수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분야 또는 업종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I) 기타 금융 서비스 제공자에 의한 금융 정보, 금융 데이터프로세싱 및 관련소프트웨어의 제공 및 전달	1) 로이티스 및 블룸버그 등 정보 제공자에 의한 금융정보 제공을 제외하고 약속 안함. 이 조치는 내국민 대우에 대한 제한 조치가 되기도 함. 적절한 통제 장치가 존재하고 데이터의 무결성과 기밀성이 보호되며 싱가포르 통화 감독청에게 데이터/정보가 처리되는 장소에서 데이터/정보에 대한 현장 접근권이 허용되는 경우, 외국은행의 싱가포르 지점은 본점 및 자매지점에 데이터 프로세싱을 위해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음. 2) 로이티스 및 블룸버그 등 정보 제공자에 의한 금융정보 제공에 한해 허용됨. 이 조치는 내국민 대우에 대한 제한 조치가 되기도 함. 3) 로이티스 및 블룸버그 등 정보 제공자에 의한 금융정보 제공은 은행 허용됨. 은행 및 중금사를 대상으로 한 금융정보 제공은 은행 및 중금사의 고객정보 기밀성 보호에 관한 국내법에 따름.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로이티스 및 블룸버그 등 정보 제공자에 의한 금융정보 제공은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8. 의료 관련 및 사회복지 서비스 B. 시설 병원 및 의료기관법에 따라 상업적으로 운영되는 금성질환 치료 병원·요양원· 양로병원 (CPC 93193**)	본 양허표의 부록에 기재된 법정 감독 서비스는 본 약속의 범위에서 제외됨.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약속 안함.	

분야 또는 업종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C. 노인 및 장애인 대상 거주 시설을 통해 제공되는 사회복지 서비스 (CPC 93311) 어린이 및 기타 고객 대상 거주시설을 통해 제공되는 사회복지 서비스 (CPC 93312**)	1) 약속 안함*. 2) 비거주 사회복지 서비스 제공자의 싱가포르 내 영업, 또는 적극적인 마케팅 수행 허용 여부를 결정할 재량권을 싱가포르가 보유한다는 것 외에 제한 없음. 3) 일부, 혹은 전체 운영 자금을 정부에서 지원받는 비영리 서비스 제공자에 의해 운영되는 시설/서비스 운영체와 관련하여 약속 하지 아니한 것을 제외하고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약속 안함*. 2) 비거주 사회복지 서비스 제공자의 싱가포르 내 영업, 또는 적극적인 마케팅 수행 허용 여부를 결정할 재량권을 싱가포르가 보유한다는 것 외에 제한 없음. 3) 일부, 혹은 전체 운영 자금을 정부에서 지원받는 비영리 서비스 제공자에 의해 운영되는 시설/서비스 운영체와 관련하여 약속하지 아니한 것을 제외하고 제한 없음. 4) 약속 안함.	
C. 그 밖의 어린이 지도 및 자문서비스 (CPC 93322)	1) 약속 안함. 2) 싱가포르에서 서비스 판매활동 또는 적극적 마케팅 활동을 벌이는 비거주 서비스 제공자에 대해 약속하지 아니한 것을 제외하고 제한 없음. 3) 국고 지원금으로 일부, 혹은 전체 운영자금을 충당하는 비영리 서비스 제공자에 의해 운영되는 시설 또는 서비스 조직에 대해 약속하지 아니한 것을 제외하고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약속 안함. 2) 싱가포르에서 서비스 판매활동 또는 적극적 마케팅 활동을 벌이는 비거주 서비스 제공자에 대해 약속하지 아니한 것을 제외하고 제한 없음. 3) 국고 지원금으로 일부, 혹은 전체 운영자금을 충당하는 비영리 서비스 제공자에 의해 운영되는 시설 또는 서비스 조직에 대해 약속하지 아니한 것을 제외하고 제한 없음. 4) 약속 안함.	
C. 거주 시설을 통하지 않고 제공되는 사회복지 서비스 (CPC 93323)	1) 약속 안함. 2) 싱가포르에서 서비스 판매활동 또는 적극적 마케팅 활동을 벌이는 비거주 서비스 제공자에 대해 약속하지 아니한 것을 제외하고 제한 없음. 3) 국고 지원금으로 일부, 혹은 전체 운영자금을 충당하는 비영리 서비스 제공자에 의해 운영되는 시설 또는 서비스 조직에 대해 약속하지 아니한 것을 제외하고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약속 안함. 2) 싱가포르에서 서비스 판매활동 또는 적극적 마케팅 활동을 벌이는 비거주 서비스 제공자에 대해 약속하지 아니한 것을 제외하고 제한 없음. 3) 국고 지원금으로 일부, 혹은 전체 운영자금을 충당하는 비영리 서비스 제공자에 의해 운영되는 시설 또는 서비스 운영체에 관련하여 약속하지 아니한 것을 제외하고 제한 없음. 4) 약속 안함.	

공급형태 : 1) 국경간 공급, 2) 해외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또는 업종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9. 관광 및 여행관련 서비스			
a. 호텔 및 레스토랑 서비스(케이 터링 포함)			
호텔 숙박 서비스 (CPC 64110)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약속 안함.	
레스토랑 및 케이 터링 서비스 (CPC 64210, 64230)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약속 안함.	
b. 여행사 및 투어 오퍼레이터 서비스 (CPC 7471)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약속 안함. 4) 약속 안함.	
c. 여행 가이드 서비스 (CPC 7472)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약속 안함.	
10. 레크리에이션, 문화, 스포츠 서비스 (시청각 서비스 제외)			
a. 도서관, 박물관 및 기타 문화적 서비스			
도서관 서비스 (CPC 96311)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약속 안함.	

분야 또는 업종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II. 운송 서비스			
A. 해상운송 서비스	다음 서비스가 WTO협정 GATS 부속서 IB 28조 (c)(ii)에 기재된 의무 사항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경우, 다음 서비스는 국제 해상운송 제공자에게 합리적이고 비차별적인 조건으로 제공될 것임.		
국제 해상운송(화물 및 승객) (7211**, 7212**)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상선법에 명시된 싱가포르 기함 등록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선박 승무원의 선박간 접근은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약속 안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로 안내 - 예선 · 도선 - 식량 · 연료 · 급수 - 쓰레기 취합 및 벨러스트 폐기물 처리 - 선박배정 - 항행원조
연안 해운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상시 - 설비 수리 - 정박 - 커뮤니케이션, 급수 및 전기 공급
해운 보조 서비스: 해운 대리점 서비스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약속 안함.	등 선박의 운항에 필수적인, 항만에 기반을 둔 서비스

분야 또는 업종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해운 보조 서비스: 해운중개 대리점 서비스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약속 안함.	
해운 보조 서비스: 싱가포르 기함을 대상으로 하는 법정 서비스를 제외한 선금협회의 서비스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약속 안함.	
12. 그 밖의 서비스			
제택, 청소, 염색 서비스 (CPC 9701)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약속 안함.	
이발 및 기타 미용 서비스 (CPC 9702)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약속 안함.	
묘지 관리 서비스, 산소 및 묘소 관리 서비스를 제외한 장례, 화장 및 장의 서비스 (CPC 97030**)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약속 안함.	

부록

싱가포르 양허표에서 제외된 사회복지 서비스 유형

1 수용 시설 거주 법정 감독 서비스 대상 유형 (CPC 9331):

- a) 여성 현장의 160장에 따라 안전한 곳에 수용된 성인 여성 및 소녀 (CPC 93312);
- b) 어린이 청소년 보호법의 8장에 따라 안전한 곳에 수용된 어린이 (CPC 93312);
- c) 어린이 청소년 보호법의 44장 (1)(f)에 따라 안전한 곳에 수용되어 있거나 어린이 청소년 보호법의 44장 (1)(g)에 따라 허가받은 학교기관⁵⁾에서 보호 관찰 중인 어린이와 청소년 (CPC 93319);
- d) 어린이 청소년 보호법의 49장 (ii)에 따라 허가받은 시설에 입소한 어린이와 청소년 (CPC 93312);
- e) 범죄자 보호 관찰법의 12장에 따라 허가받은 기관에 반드시 입소 거주해야 하는 보호 관찰 대상자 (CPC 93319).

2 수용 시설 비거주 법정 감독 대상 유형 (9332):

- a) 어린이 청소년 보호법의 49장 (i)에 따라 지정된 복지 담당 공무원의 감독을 받는 어린이와 청소년 (CPC 93329);
- b) 범죄자 보호 관찰법의 5장에 따라 허가받은 기관에 입소 거주할 필요가 없는 보호 관찰 대상자 (CPC 93329).

5) 어린이 청소년 보호법의 44장 (1)(g)에 언급된 “허가받은 학교 기관”은 주류 교육 기관이 아닌 미성년 범죄자를 위한 소년원을 말함. 미성년 범죄자들은 정식 교육이 아닌 재활의 목적으로 “허가받은 학교 기관”에 수용됨.

첨부 참조 문서

적용범위

아래 사항은 기본 전기통신 서비스의 규제 기본틀에 관한 정의 및 원칙에 관한 것이다.

정의

이용자라 함은 서비스 소비자와 서비스 공급자를 말한다.

필수 설비라 함은 다음과 같은 공중전기통신 전송망 또는 서비스의 설비를 말한다.

- (a) 하나의, 또는 제한된 수의 공급자에 의해 배타적으로 또는 지배적으로 제공되고,
그리고
- (b)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경제적 또는 기술적으로 쉽게 대체될 수 없는 설비

지배적 사업자란 다음의 결과로 기본 전기통신 서비스 관련 시장에서 참가조건(가격 및 공급에 관한 것)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업자이다.

- (a) 필수 설비에 대한 지배, 또는
- (b) 시장에서의 자신의 지위 이용

1. 경쟁 보호장치

1.1. 통신 분야에서의 반경쟁적 관행 방지

단독으로 또는 공동으로 지배적 사업자인 사업자가 반경쟁적 관행에 관여하거나 이를 지속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적절한 조치가 유지되어야 한다.

1.2. 보호장치

1.1.에 언급된 반경쟁적 관행은 특히 다음을 포함한다.

- (a) 반경쟁적 교차보조에 관여하는 것
- (b) 반경쟁적 결과를 수반하며 경쟁자로부터 획득한 정보를 이용하는 것, 그리고
- (c) 다른 서비스 사업자들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필수설비에 관한 기술적 정보와 상업적으로 관련된 정보를 시의적절하게 이용 가능하도록 하지 아니하는 것

2. 상호접속

2.1. 본 항은 양허한 분야에 한해, 한 공급자의 이용자들이 다른 공급자의 이용들과 커뮤니케이션하고 다른 공급자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해 공중전기통신망 또는 서비스의 공급자 간 접속에 적용된다.

2.2. 상호접속을 위한 요건

지배적 사업자와의 상호접속은 망 내에 기술적으로 가능한 모든 지점에서 보장된다. 이러한 상호접속은,

- (a) 비차별적 조건 (기술 표준 및 규격을 포함한다) 및 그 자신의 동종 서비스 또는 비계열사 서비스 공급자의 동종 서비스 또는 자회사나 그 밖의 계열사에 대하여 제공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요금과 품질로 제공되어야 한다.
- (b) 시의적절하게, 투명하고 합리적이며 경제적 실현 가능성을 고려한, 그리고 서비스가 제공되기 위하여 요구되지 아니하는 망 요소 또는 설비에 대하여 지불할 필요가 없도록 충분히 세분화되어 있는 조건(기술 표준 및 규격을 포함한다)과 원가지향적인 효율로 제공되어야 한다.
- (c) 요청이 있는 경우, 다수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망 종단점에 추가한 지점에서 필요한 추가적인 설비의 구축 비용을 반영하는 효율을 조건으로 하여 제공되어야 한다.

2.3. 상호접속 협상 절차의 공개

지배적 사업자와의 상호접속에 대하여 적용가능한 절차를 공개한다.

2.4. 상호접속 협정의 투명성

지배적 사업자가 자신의 상호접속 협정 또는 상호접속 제공 지침을 공개하도록 보장한다.

2.5. 상호접속의 분쟁해결

지배적 사업자와의 상호접속을 요청한 서비스 공급자는

- (a) 언제든지, 또는
- (b) 공개적으로 알려진 합리적 기간 후에 상호접속을 위한 적절한 조건 및 요금(이러한 조건 및 요금이 사전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 한정한다)에 대한 분쟁을 합리적인 기간 내 해결하기 위해 독립적인 국내기관(5항에 언급된 규제기관 포함)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3. 보편적 서비스

각 당사국은 자국이 유지하기를 희망하는 보편적 서비스 의무의 종류를 규정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이러한 의무는, 그것이 당사국에 의하여 투명하고, 비차별적이며, 경쟁

중립적인 방식으로 시행되며 당사국이 규정한 종류의 보편적 서비스에 대하여 필요한 이상으로 부담이 되지 아니한다면, 그 자체로서 반경쟁적인 것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4. 허가 기준 공개

서비스 공급을 위하여 허가가 요구되는 경우, 다음의 사항을 공개하여야 한다.

(a) 모든 허가 기준과 허가 신청에 대한 결정에 이르는 데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기간
그리고

(b) 개별 허가 요건

요청이 있을 때 허가 거부의 사유를 신청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5. 독립적인 규제기관

규제기관은 어떠한 기본 전기통신서비스 사업자와도 분리되고, 책임지지 아니한다. 규제기관의 결정과 규제기관이 사용하는 절차는 모든 시장 참가자에게 공정해야 한다.

6. 희소자원의 분배 및 이용

주파수·번호 및 선로설치권을 포함한 희소자원의 분배 및 이용에 관한 절차는 객관적이고, 시의적절하며, 투명하고, 비차별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분배된 주파수 대역의 현재 상황을 공개하되, 특정한 정부 사용 목적으로 분배된 주파수의 세부 내역에 대해서는 공개를 요구하지 않는다.